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20. 6. 17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- 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5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교통지도과장 박광옥】

### 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감액 규정 삭제  
(안 제2조제4항)
- 승용차 요일제(경과기간: '20.7.8.)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 
(안 별표 1 제14호)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사항과 유효기간이 만료

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제4항)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액 규정내용을 삭제하고,
- (안 별표 1 제14호)에 승용차 요일제(경과기간:‘20.7.8.)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액 규정 삭제와 「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다만, 구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도움이 된 제도인 승용차요일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주는 승용차마일리지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